

# 목 차

## 발제

- 01.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 1  
함태성 교수 | 강원대학교
- 02. 현장에서 만난 동물보호법 ..... 25  
조희경 대표 | 동물자유연대

## 토론

- 01.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 위기동물  
권유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 41
- 02. 반려동물을 위해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정지현 변호사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 51
- 03. 농장동물의 생애  
김현지 팀장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 57
- 04.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실험동물법  
유영재 대표 |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61
- 05. 동물보호법 개정방향  
김철기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65



· 발제 01 ·

#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함태성 교수 | 강원대학교



#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함태성 교수 | 강원대학교

## 1. 서론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동물의 보호·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이 중 동물의 보호를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행 법률인 동법은 1991. 5. 31. 제정되고 동년 7. 1.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30년을 맞았다.

동물보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중요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의 이용 및 관리 중심의 기존 동물 관련 법령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된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기 보다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난과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타율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1991년 동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심사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동 심사보고서에서는 “80년초부터 국제동물보호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고 국내적으로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

보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sup> 당시 88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개고기 식용문제 등 국내의 동물보호실태에 대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동물보호법의 입법 추진을 견인한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제정 동물보호법은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던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법률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법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그 가치의 세계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의 동물에 대한 보편적 생각과 공감대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과정이 바로 입법 과정이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동물보호법의 입법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입법적 역동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그 동안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동물시민단체 및 언론 매체 등에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사회적으로는 이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곤 하였다. 최근에는 찬반 논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동물 거버넌스’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견 개진과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이러한 논의들이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및 국회의 동물보호법 입법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역동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

한편, 우리의 전통법학 내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물보호법도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동물생명의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동물학대방지 및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들을 추가해 왔다. 또한 이러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우리 전통 법학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동물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1)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1991. 5), 4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완비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흐름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사회와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입법 연혁을 개정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 이를 토대로 동물보호법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의 동물 관련 입법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동물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법적인 측면에서의 동물보호는 다른 입법 목적을 지닌 개별 법령의 일부 조항들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개별 법령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권 보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보호, 자연환경보호나 문화재(천연기념물)보호 규정 등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물이 보호되는 형식이었다.

예컨대, 형법(1953년 제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재물손괴죄 규정을 둠으로서 재물로서의 동물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는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지만, 부수적으로 동물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sup>2)</sup> 그러나 이 또한 동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조항은 아니었다.

---

2) 1954. 4. 1. 제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

35. 인축에 가해할 성벽이 있는 축견 기타 조수류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또는 그 감시를 태만히 하여 이를 도주케 한 자

36. 축견 기타의 동물을 사주하여 인축에 달려들게 하거나 또는 우마를 놀래여 도주케 한 자

그 외 자연환경의 일부로서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1967. 3. 30. 제정)<sup>3)</sup>이나 문화재(천연기념물)로서의 동물을 보호하는 문화재보호법(1962. 1. 10. 제정) 등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동물이 보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동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은 아니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정 이전의 동물 관련 입법의 대부분은 동물의 이용이나 관리를 위한 법령들이었는데, 예컨대, 가축전염병예방법(1961. 12. 30. 제정), 축산물가공처리법(1962. 1. 20. 제정. 이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명 변경), 축산법(1963. 6. 26. 제정), 낙농진흥법(1967. 1. 16. 제정) 등 농장동물의 위해관리와 축산 분야의 발전·진흥을 위한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들 법률 또한 공중 보건이나 축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것이었고 동물의 보호는 인간 또는 공공의 이익 보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도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제기되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동물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Ⅲ. 「동물보호법」의 입법 연혁과 평가

#### 1. 1991년 동물보호법 (1991,5.31. 제정법률)

##### (1)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단행 법률이 1991. 5. 31. ‘동물보호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었다. 모두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동법률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3) 현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제1조).

동법의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의 보호

제4조 동물보호운동

제5조 적절한 사육·관리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의 수술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12조 벌칙

동법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규율 내용이 매우 빈약하고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결여된 법률이었다. 특히 동법은 제정 이후 2007.1.26. 첫 법률개정이 있을 때까지 15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법은 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명목상의 법률로 존재하였다.

## (2) 평 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정 동물보호법은 국내의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비난 여론과 압박이 입법 추진의 주된 동기 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법에서는 동물을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었다(제2조 제1호). 이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가축의 개념 및 범위<sup>4)</sup>와 유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동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동물의 개념을 '가축'과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던 당시 우리 사회의 관념이 엇볼 수 있다.<sup>5)</sup>

제6조에서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었으나<sup>6)</sup>,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제11조에서 다양한 적용 제한 규정<sup>7)</sup>을 두고 있어서 실제로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협소하였다.

또한 제12조 벌칙 조항에서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약하게 규정되어 있었고(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동물학대에 관한 제6조 규정 위반 이외에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동법의 실효성 및 집행력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한편, 동물실험과 관련하여서는 제10조 단 하나의 규정만을 두었는데, 그 내용이 추

- 
-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축산법 제2조 제1호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5)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동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6)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 ③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뼈·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상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관계로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농장 동물을 별도로 규율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1년 동물보호법은 외부로부터의 입법 압력을 받아 제정된 타율적 입법의 성격이 강하였고, 그 내용과 규율 방식에 있어서도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형식적이고 실효성없는 법률이었으며, 정부의 법 집행 의지가 거의 없었던 명목상의 법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 2. 2007년 동물보호법 (2007.1.26. 전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1991년 동물보호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동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작업은 전부개정 법률 형식으로 이루어졌고,<sup>8)</sup> 그 결과 조문은 12개에서 26개로 늘어났으며,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었다.<sup>9)</sup>

동법의 목적 조항에서 ‘복지를 증진하며’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보호입법에서 동물복지 이념의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

8)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용어와 규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9) 동법은 총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8조 동물의 운송,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10조 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12조 동물의 수술, 제13조 동물실험의 원칙, 제14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제16조 준수사항, 제17조 교육, 제18조 적용의 제한, 제19조 동물보호감시관, 제20조 출입·검사 등, 제21조 등록취소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25조 별치, 제26조 과태료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동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관심 부족과 법 집행기관의 의지의 결여 등으로 여전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법률에 머물러 있었다.

2007년 전부개정的主要内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동물의 등록제 도입(제5조)
-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제6조)
-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의 구체화(제7조)
-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제8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제19조)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제25조 및 제26조)

## (2) 평 가

1991년 동물보호법을 ‘속 빈 강정’에 비유할 수 있다면, 2007년 동물보호법은 ‘두 배로 커진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에서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동물학대행위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등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으나, 여전히 선언적 규정 위주로 되어 있었고 동물보호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동법에서 도입한 동물등록제는 동물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반려동물 정책 수행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전국적인 시행은 2014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게다가 시행 이후 몇 년간 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4년에 단 1건에 머무르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되었다.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 정책의 필수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2007년 전부개정시부터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를 시행하였다면 현재의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와 어려움은 많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동물실험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렇게 2개의 조항만을 두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관리·감독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형식적인 규율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향후 실험동물에 복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듬해인 2008.3.28. 식약처 소관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실험동물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대규모 집약적인 농장동물 사육시설이 증가하면서 농장동물의 사육 및 관리체계 강화 및 동물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었으나, 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 3. 2011년 동물보호법 (2011.8.4. 전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2007년 전부개정된 법률을 다시 한번 전부개정한 법률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부개정법률을 4년 후 다시 한번 전부개정하는 흔하지 않은 입법사례를 남겼다. 이는 2007년 법률이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법률은 장별 편제 구성을 처음으로 채택하면서 총 7장<sup>10)</sup> 47조로 이루어졌다. 동물보호법의 뼈대가 현행 법률처럼 갖춰지게 된 것이 이때이다. 이후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만 반영하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그에 상응

---

10)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하여 동물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잔혹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열악한 사육환경의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동법에서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두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면서 가축전염병의 상시화·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구제역이 81개 시·군에서 발생하여 353만 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 되었고, 피해액도 총 2조 8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장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전염병의 확산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복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2011년 법률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새로 두게 되었다.

2011년 전부개정的主要内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2007년 법률에서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규정되었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의 내용<sup>11)</sup>을 ‘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완함(제3조)<sup>12)</sup>
- 책무 규정에서 5년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 규정을 새로 둬(제4조)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새로 둬(제5조)

---

11)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복수의 규정을 새로 둠(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 새로 추가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제46조)

## (2) 평 가

2011년 동물보호법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원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의 골격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동법은 여전히 반려동물 중심의 규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외 실험동물, 농장동물을 규율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동물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제6조 규정도 이때 새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6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제4조에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는데,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중장기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과 기본틀을 담은 정책수단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인력·예산 확보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3)</sup>

한편,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였다.<sup>14)</sup> 즉,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16조(신고 등), 제17조(공고),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22조(동

13) 동 조항에 기초하여 2015년 첫 번째 동물복지종합계획(2015-2019)에 이어 2020년 두 번째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된 바 있다.

14) 그 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의 규정이 추가함으로써, 제8조의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통한 형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물실험과 관련하여서도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동법 제3장을 동물실험에 관한 장으로 구성하고,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덧붙여,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 이처럼 동법에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실험동물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실험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게 되었다. 그만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자는 이후 협력관계도 긴장관계도 없는 무관심의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실험동물의 법적 규율 또한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한편,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농장동물의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향후 공장식 축산에서의 스톨(Stall)이나 배터리케이지(Battery Cage) 문제 개선 등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 4. 2013년 동물보호법 (2013.4.5., 2013.8.13. 일부개정법률)

2013년 이후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형식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2013. 4. 5. 일부개정법률

일명 ‘소 아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례에서처럼 동물에게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여 동물이 죽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리가 문제되었다. 즉, 사료나 물을 주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러한 가혹행위가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가 시·도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학대행위의 내용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행위를 추가하고(제8조제2항제4호 신설),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였다(제14조).

## (2) 2013. 8. 13. 일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사회적으로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온라인 동물판매 시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배송이 늘면서 이동과정에서 동물이 죽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반하여 동물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처벌받는 학대행위의 유형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졌다.

이에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의 운송 및 도살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3. 8. 13.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을 정의함에 있어 종전의 열거 방식 대신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핵심 표현으로 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함(제2조제1호)<sup>15)</sup>
- 동물학대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였음(제2조제1호의2 신설)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

15)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신설)

-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물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7조제1항제2호 신설).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제9조의2 및 제47조제3호 제4호 신설).
-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제10조제2항).

## 2) 평가

2013. 8. 13. 개정은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대응 및 동물복지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둔 개정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동물의 정의를 다시 규정하였다. 종전에는 동물을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① 포유류 ② 조류 ③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1호).<sup>16)</sup>

동물의 정의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동물의 중요한 징표로 정한 것은 제레미 벤담과 피터 싱어적인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동물보호법에서는 해당 동물이 지각력(知覺力) 또는 쾌고감수능력(快苦感受能力)이 있는지가 규율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동물에 대한 보호의 정도, 동물복지의 내용과 범위 설정, 수단의 선택 등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해당 동물이 반려동물인지, 실험동물인지, 농장

---

16)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는 동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 포유류, 조류는 식용 목적이든 아니든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한편, 낙지·문어와 같은 연체동물, 곤충과 같은 절지동물 등 무척추동물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동물인지, 동물원 동물인지, 야생동물인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각력 또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은 동물학대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동법의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7)</sup>

동법은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제2조 1의2호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의 동물학대 개념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주의의무위반뿐만 아니라 방치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8조 동물학대금지 규정에서는 동물학대의 유형을 제한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물학대 개념을 온전히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 동물생명의 존중 및 동물학대금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동물학대 개념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열거적 방식이 아닌 예시적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법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당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살처분되는 가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살처분시 살아있는 상태로 생매장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이를 개선하고자 동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있는바, 동물생명의 존중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 5. 2015년 동물보호법 (2015.1.20. 일부개정법률)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나, 소변의 경

---

17) 동물학대금지 이외에는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실험동물법, 동물원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원수족관법,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생물법이 제정되어 있고, 동물보호법과 이들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개별법률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에는 적절한 규율이 되지 않아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 이웃 상호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의 소변의 경우 주택 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 거주자 상호간의 마찰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제13조제2항).

## 6. 2017년 동물보호법 (2017.3.21. 일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2017년 일부개정에서는 그 동안 변화된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상당한 폭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실·유기동물 등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동법상의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소유자등’의 정의를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개정함(제2조제3호).
-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함(제4조제1항제2호).
-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3항).
-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제8조제5항).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함(제14조제2항 신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5조제2항 신설).
-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함(제32조 및 제33조 등).
-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제34조 등).
-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37조제2항 및 제38조의2 신설).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제41조의2 신설).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1항 및 제6항).

## (2) 평 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유자를 위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동물로 인한 피해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일명 ‘나비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례에서와 같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강아지 공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생산업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는바, 동법에서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은 등록제로 관리하고(제32조 및 제33조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제34조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문제의 많은 부분이 동물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엄격한 허가 요건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에서는 반려동물문제의 출발점을 동물생산업으로 보고 사적 영역의 동물생산업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명 ‘개파라치’ 제도로 알려진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바, 동물보호법상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견주의 개인정보와 위반행위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동법상의 포상금 제도는 헌법 또는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2020년 일부개정시 폐지되었다,

## 7. 2018년 동물보호법 (2018.3.20., 2018.12.24. 일부개정법률)

### (1) 2018. 3. 20. 일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2017년 유명 연예인의 개에 사람이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험한 개의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종전에는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에 동법 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원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시키는 것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8. 3. 20.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법의 목적 조항에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점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추가함(제1조).
-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였음(제2조 제3호의2)<sup>18)</sup>
-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제13조의2).<sup>19)</sup>
- 동물의 과밀수용 문제, 즉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둠(제8조 제2항 3의2호)<sup>20)</sup>
-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제15조 제8항).
-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함(제23조)<sup>21)</sup>

18) 제2조(정의)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9)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제24조의2 신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2) 평 가

동법은 목적 조항을 개정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동법의 입법 목적에 추가하였는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철학과 가치를 적절하게 밝힌 것이라고 본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이 동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으므로,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고, 하위 법령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입법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마찰과 불편이 증가하고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맹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맹견의 범위를 법령에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개도 언제든지 잠재적 위험이 외부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질평가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응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은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향후 애니멀 호딩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애니멀 호딩은 행위자의 심리학적 장애와 관련되는 것으로, 동물들이 적절한 관리없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애니멀 호딩은 행위자의 정신적 상태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대량의 방치된 동물들의 보호 및 관리, 주변의 공중위생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관련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동물들의 구조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애니멀호더들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심리상담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21)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법에서는 실험동물 보호와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8년 「화장품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화장품법 제15조의2). 향후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2018. 12. 24. 일부개정법률

최근에는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늘고 있고, 이와 함께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도 늘고 있다. 이에 동법 개정을 통하여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제33조제3항제5호나목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3조의2 신설).

한편, 개정법률에서는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33조제3항제4호).

## 8. 2019년 동물보호법 (2019.8.27. 일부개정법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변경·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4항).

## 9. 2020년 동물보호법 (2020.2.11. 일부개정법률)

## (1) 주요 내용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맹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일부개정시 맹견의 정의와 종류를 지정하였는데,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시행 2021. 2).

또한 동물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2020년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함(제2조 1의3)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제13조의2제4항 신설)<sup>22)</sup>.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7조 2의6)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sup>23)</sup>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sup>24)</sup>

---

22)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3)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 (2) 평 가

2020년 일부개정에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이들 개와의 잡종견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이들 맹견의 소유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 개물림 사고가 이들 견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견종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는바, 추후 책임보험 가입 의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해당 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국 선언적 규정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동법에서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벌로 전환하였다. 이는 동물유기행위가 해당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동물유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로 규율하게 되었다. 동물학대행위가 우리 사회의 주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 10. 동물보호법 입법과정에 대한 총평

24)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은 한 사회의 가치를 담은 그릇이다.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가 지난 30년간의 동물보호법 개정과정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먼저, 동물보호법 입법과정이 매우 역동적이었다는 점이다. 동물 관련 이슈의 제기와 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쟁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모색되어진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및 국회의 동물보호법 입법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된 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이나 학대행위가 함께 증가하였고, 점차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 법률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7년 3월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의 개정은 동물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아니 되는 주요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셋째,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동물의 사육에서부터 운송, 도살에 이르기까지 동물복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동물보호·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

넷째, 초기에는 반려동물 중심의 규율을 하였지만, 이후 실험동물, 농장동물 등에 관한 규정들을 추가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동물보호법 입법과정에서 ‘동물 거버넌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시민단체, 동물관련영업 종사자, 학계, 일반시민,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동물문

제를 논의하는 장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관련 부처들도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입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IV. 「동물보호법」의 향후 과제

###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는 그릇

향후 우리 사회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그릇에 어떠한 철학과 가치를 담을 것인가.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동법의 목적 조항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다.

동물보호법 제1조 목적 조항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1차적 또는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②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2차적 또는 중간 목적으로 하며, ③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동물보호법이라는 그릇에는 동물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같은 철학과 가치가 실질적인 의미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수단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물건’에서 ‘생명’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

우리 민법과 형법은 동물을 물건과 재물로 설정하고 인간과 동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원이고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기존 전통 법학이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생명의 존엄성, 동물복지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헌

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기존 법학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33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은 독일의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토대를 만들면서 독일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그 결과 1990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민법상 물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고, 손해배상 및 소유권에 관한 조항, 나아가 민사소송법 등에서의 동물관련 조항의 개정을 이루어 냈다.<sup>25)</sup> 또한 200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이끌어냈는데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토대로 기존 전통법학이 동물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입법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3.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동물보호법 제6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의 규정대로 동법이 동물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도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동물의 보호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일반법적인 지위와 별개로 동법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해당 분야 법체계의 이념과 방향, 기본원

---

25) 독일 민법 제90a조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주었고, 민법 제251조 제2항 2문에서는 “피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 치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법상의 한계를 해소하였다. 또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811c조 제1항에서는 “가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영리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은 압류에 제공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할 수 근거를 두게 되었다.

칙, 국가의 책무 등을 정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해석의 지침이 된다. 그리고 해당 분야 법령들의 체계적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보호를 포함하여 동물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도 기본법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미 동물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들이 다수 존재하고 각각 다른 목표와 기본원칙에 의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이념과 방향, 기본원칙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분야 법령들의 체계적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4. 동물보호·복지 행정의 실효성 및 집행력의 강화

동물 관련 쟁점들은 여러 부처에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부처의 동물관련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물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의 역할 제고와 행정의 실효성 및 집행력 강화, 동물보호업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담당 부서의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긴급 현안이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현재의 조직만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동물복지국’과 같은 새로운 독립 부서를 만들거나 정책적 뒷받침을 해 줄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동물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5. 입법적 제안 - 동물학대 금지 규정 방식의 개정

동물보호법은 제2조에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제8조에서 동물학대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학대 개념과 동물학대금지 규정이 서로 합(습)이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동물학대 개념에 포섭되는 행위가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금지된다.

오늘날 동물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학대금지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동법상의 동물학대 개념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동물학대 금지규정을 열거 방식에서 예시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적절한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법과의 체계 및 구성의 틀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문구의 일부만을 삭제하여 예시규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제8조 제1항 4호와 제2항 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예시규정화한다.

둘째, 제8조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의 단서는 삭제하고 적용 제한 조문에서 규정한다, 적용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는데, 제8조 내에 항을 달리하여 둘 수도 있고, 조문을 달리하여 둘 수도 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

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살  
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0조(적용의 제한)

- 1.
- 2.
- 3.

이러한 방식의 개정에는 있어서는 적용 제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인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동물 거버넌스’의 운영이 필수적이고, 동물생명 존중,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등과 같은 철학과 가치가 논의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발제 02 ·

# 현장에서 만난 동물보호법 그 변화와 한계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 현장에서 만난 동물보호법

## 그 변화와 한계

조희경 대표

2020. 9. 25.



### 목차

- I. 동물보호법 이전의 한국사회
- II. 동물보호법을 통한 변화
- III. 동물보호법의 한계
- IV. 결론 : 앞으로의 동물보호법

동물 = 애완, 애호의 대상 ↔ 동물 보호 = 해외의 특이 이슈

동아일보 (1990. 5. 8일자)

“성업중인 서울 퇴계로 4가 애견거리... 보통 45~60일 정도 지난 강아지를 많이 사는데...”

“동물애호국으로 이름난 영국은 요즘 임자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떼들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물은 단순한 물건 / 사적재산의 영역, 야생조수에 한해 조수보호법에 의한 보호

▶ 관련 법제

민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p>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p> <p>제99조(부동산, 동산)</p> <p>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p> <p>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p>	<p>제2조 (정의) 1. "야생조수(이하 "鳥獸"라 한다)"라 함은 산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짐승이 동물(輸入된 것을 포함한다)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I. 동물보호법 이전의 한국사회

II. 동물보호법을 통한 변화

III. 동물보호법의 한계

IV. 결론 : 앞으로의 동물보호법

## 0. 동물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

정부입법에 의해 1991년 5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

### ▶ 제정배경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국제동물보호재단(IFAM)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동물학대 행위의 금지를 요청, 향후 외교 및 무역에 악영향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정 추진

### ▶ 적용범위

당시 농림수산부는 개식용과 관련, 국제적 압력과 고육식품이라는 현실을 감안 이를 금지하지도 양성화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의 규정에서 제외<sup>1)</sup>

### ▶ 구성

하위법령 없이 전문 12조의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물의 보호

제4조 동물보호운동

제5조 적절한 사육·관리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 동물의 수술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12조 벌칙

1) '동물보호법 제정 추진', 한겨레, 1990. 05.02.

▶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변화 과정

구분	동물보호법 이전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현재
인식	애완동물의 경우 개인의 문제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가 주류 인식	동물학대는 범죄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동물학대는 범죄
의미와 범위	동물학대 행위의 구체화 / 유형의 학대 (방치) 등		
양형 결과		대부분 비실형 (벌금형)	실형 판례의 증가 경의선 자두 징역 6월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 징역 4월

▶ 현장사례 : 식용 목적의 개도살에 대한 판례 변화

구분	동물보호법 이전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현재
식용 목적의 개도살	문제제기 자체의 부재	<p>동물학대 vs 식용 면죄부</p> <p>서울지방법원 2003노1839판결</p> <p>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p> <p>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p> <p>인천 전기 개도살 사건 1심, 2심</p> <p>개를 죽이게 된 경위 (식용목적), 개를 죽이는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전살법)에 비추어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p>	<p>인천 전기개도살 동물학대 인정</p> <p>인천 전기개도살 사건 대법원판결</p> <p>① 잔인한 방법의 여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②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③ 같은 도살방법 일지라도 동물별 특성에 따라 고통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고 ④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p> <p>파기환송심</p> <p>해당 도살방식은 무의식을 유발하기에 부적절하며, 무의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않는 이상 이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어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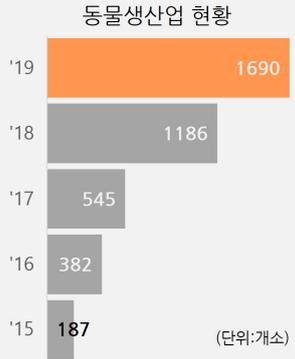
▶ 현장사례 :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천안 펫숍 78마리 방치 살해사건	유튜버 승냥이 반려견 학대 사건
<p>천안의 한 펫숍에서 강아지 79마리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p>  <p><b>적용영</b>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p> <p><b>판결</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p>	<p>유튜브 방송 중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내리치고 침대에 강하게 집어던진 사건</p>  <p><b>적용영</b>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8조제5항제1호 학대행위 영상물을 전시하는 행위</p> <p><b>판결</b>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p>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제반 요소의 변화

구분	동물보호법 이전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현재
인식	<b>'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b>		
사육 환경	집 지키는 개 개밥, 목줄	사육환경의 중요성 반려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 증대	방치, 애니멀호밍에 대한 규정 동물등록, 맹견관련 규정 등 반려인의 책임 중요
동물 관련 영업	애완동물 가두거리 중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성장 영업 관련 규제의 마련	영업의 다양화 8개업 규율

▶ 현장사례 : 동물생산업의 규제

구분	동물보호법 이전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현재
동물생산	<p>‘강아지 공장’</p> 	<p>점진적 규제조항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 신고 → 허가제</li> <li>• 시설 및 인력기준</li> <li>•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li> <li>• 지자체의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의무화</li> <li>• 무허가 영업의 처벌</li> </ul>	<p>한계는 있으나, 규제 및 관리의 대상</p> <p>동물생산업 현황</p>  <p>(단위:개소)</p>

11

▶ 현장사례 : 유기동물의 보호

구분	동물보호법 이전	동물보호법의 제·개정	현재
유기동물	‘떠돌이개, 들개’	지자체의 보호의무 보호센터의 마련	<p>유기동물의 복지와 고통사 방지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락사의 자연사 대체</li> <li>· 원인불명 자연사율 20%<sup>1)</sup></li> <li>· 경음보호소 도살장 유통, 보성보호소 불법안락사, 천안 보호소 학대 사건 등 운영 및 관리부실 문제 대두</li> </ul>
유기동물의 증가	<p>(단위:만마리)</p> 		

1) '15-18년 자연사한 유기동물 102,915마리 중 사망원인 미분류 20,902마리 (분류 중에서도 미상 31,337마리, 기타 10,346마리로 사실상 61%가 원인 미상)

12

▶ 공장식 축산과 동물복지축산

관행축산 (동물복지 축산)	산란계의 일생	동물복지축산
1/2~1/3 부리자르기  배터리 케이지 마리당 0.042㎡  강제 털갈이 단식 및 절수  도태	7일 부리자르기  14일~35일 입식  420일 산란율 감소  540일~700일	원칙적 금지 카니발리즘 예상시 1/3로 제한  평사 및 자유방목   마리당 0.142㎡ 해, 깔짚 등 제공  강제 털갈이 금지 도태
		

※ 자료참고: 야생에서 크는 닭들...돼지나 소는 부러울밖에, 한겨레, 2012. 2. 17.

▶ 실험동물 관련 변화



I. 동물보호법 이전의 한국사회

II. 동물보호법을 통한 변화

III. 동물보호법의 한계

IV. 결론 : 앞으로의 동물보호법

## 1. 동물의 정의

### ▶ 동물의 정의 한계 : 식용 목적인 경우,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 산천어축제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건 각하처분

산천어축제 불기소 이유 통지서  
[서울지방법검찰청 2020. 6. 2.]

...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피학대 동물의 보호·격리 조치의 한계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고양 불법 번식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주민이 돌보던 동네 고양이 살해</li> <li>● 살해 다음날 새끼 고양이 분양</li> <li>● 분양 다음날 동네 고양이 추가 살해</li> <li>● 수사 중 지속적 고양이 분양 시도</li> <li>● 공판 중 고양이를 키우고 있음이 밝혀짐</li> <li>● 징역 실행 후 가족의 고양이 사육포기</li> <li>● 고양이 2마리 지자체 보호소 입소</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대상 동물의 한계                  ✓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불가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피학대 동물에 한해 격리조치의 대상</li> <li>· 학대 우려가 있음에도 격리조치에 한계</li> <li>· 학대자의 재분양 제재 불가</li> </ul>	<p>동물자유연대 경기도 고양시 불법 번식장 현장 방문                  → 사체 3구 발견 및 자가진료 흔적 발견                  ⇨ 지자체 : 사유지 출입 불가   격리조치 불가</p>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격리 조치의 한계                  : 시행시점과 판단주체의 문제, 소극행정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li> <li>· “학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li> <li>· “법원에서 학대 판결이 나오면 취하겠다”</li> </ul>

▶ 위기동물의 개념 확장 필요

현행 동물보호법 상 보호조치의 대상	개념 확장
<p>유기·유실동물</p> <p>피학대 동물 (신체적 고통, 상해의 인과관계)</p>	<p>“위기 동물”</p> <p>유기·유실 동물</p> <p>피학대 동물, 학대 우려/예상 동물</p> <p>재해재난시 위험에 노출된 동물</p>
<p>유기·유실동물의 보호와 일부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에 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감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구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보호</div> </div>	<p>“사회적 안전망 구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감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구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ccc; padding: 5px;">보호</div> </div>

### 3. 반려동물

#### ▶ 새로운 형태의 변종 영업의 등장, 법의 사각지대 발생

#### 파양, 구조동물 이용한 신종펫숍 부작용 심화

**신종펫숍**

- 파양, 구조동물에 대한 보호비와 입양비를 취하는 중개업
- ‘안락사 없는 보호소’, ‘요양 보호소’ 등 문구로 홍보하나, 영리목적의 상행위에 불과, 피해사례 속출
- 현행 동물보호법 상 파양 및 입양중개 업체에 대한 규정 부재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유지, 확대

#### 피해사례 유형 (동물자유연대 조사 2020. 5월)

<p><b>보호 동물 관리 부실 및 방치</b> - 아사에 이르거나 - 치료없이 질병 방치 - 자가진료 실시 등</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10</b></p>	<p><b>파양 후 적절한 돌봄 및 입양여부에 대한 정보 미제공</b> 8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8</b></p>				
<p><b>입양 후 문제 발생</b> - 거짓 정보 제공 - 질병있는 개체 분양 등 10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10</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b>파양 철회 및 파양비 반환 불가</b> 5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5</b></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b>파양동물을 미끼로 펫숍 동물 분양 유도</b> 1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4</b></p>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검증절차 없는 입양</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1</b></p> </td> </tr> </table>	<p><b>파양 철회 및 파양비 반환 불가</b> 5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5</b></p>	<p><b>파양동물을 미끼로 펫숍 동물 분양 유도</b> 1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4</b></p>	<p>검증절차 없는 입양</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1</b></p>	
<p><b>파양 철회 및 파양비 반환 불가</b> 5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5</b></p>	<p><b>파양동물을 미끼로 펫숍 동물 분양 유도</b> 1건</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4</b></p>				
<p>검증절차 없는 입양</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b>1</b></p>					

※ 접수 피해사례 39건 중 단순 제보 제외, 사례 유형화

### 4. 농장동물

#### ▶ 반려동물 중심 동물보호법의 한계, 관행 축산의 패러다임 유지

동물복지농가 = 전체 축산농가의 0.2% (농가수 기준)

축종	도입	농장수 (호)			사육규모 (마리)		
		인증 농가수	전체 농장수	전환 비율	인증 사육규모	전체 규모	전환 비율
산란계	‘12년	144	963	15.0%	2,316	72,701	3.2
육계	‘14년	89	1,508	5.9%	6,754	8,8738	7.6%
돼지	‘13년	18	6,133	0.3%	48	11,280	0.4%
젖소		11	6,168	0.2%	1,412	408	0.3%
한·육우	‘15년	-	94,007	-	-	3,237	-
오리		-	486	-	-	8,637	-

※ 전체 농장수 및 사육규모 : 2019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사천 새끼 돼지 망치 살해 사건(2018)  
: 도태 대상에 대한 기준 부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2019)  
: SOP 위반 및 비인도적 처리에 대한 처벌 조항 부재

▶ 반려동물 중심 동물보호법의 한계, 미진한 실험동물의 복지 문제

동물보호법의 한계	반복되는 동물실험 문제
<p><b>윤리위원회 실효성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 실질에 대한 규제 한계</li> <li>· 기능의 한계 (지도감독, 조치 요구에 한정)</li> <li>· 독립성 보장 한계</li> </ul>	<p>‘17. 서울대 실험견 불법 공급</p>
<p><b>동물실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부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R원칙의 선언적 규정에 그침</li> </ul>	<p>‘19. 경북대 실험견 불법 공급</p> <p>‘19. 서울대 검역탐지견 메이 사건</p>
<p><b>실험윤리 위반시 제재 한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에 한해 벌금</li> <li>· 윤리위와 관련 미운영, 미심의시에만 300만원 과태료 불과</li> </ul>	<p>‘20. 서울대 고양이 대상 인공와우 실험</p>

- I. 동물보호법 이전의 한국사회
- II. 동물보호법을 통한 변화
- III. 동물보호법의 한계
- IV. 결론 : 앞으로의 동물보호법

#### IV. 결론 : 앞으로의 동물보호법

#0 동물관련 법체계 정비



#1 동물의 개념 재정의



#2 위기동물에 대한 정의 및 보호조항 강화



#3 산업 이용 동물에 대한 규정 해석 강화

0

**[ 동물관련 법제 정비 ]**

- 동물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 및 민법상 물건과의 구분
- 시혜적 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전환
- 동물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과의 체계 정비

1

**[ 동물의 개념 재정의 ]**

- 현 동물보호법상 무척추 동물, 식용목적의 파충류·양서류·어류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예 : 산천어 축제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기각)
- 반려동물 중심의 법조항 및 폭 넓은 예외 조항으로 농장/전시/실험동물 등 산업이용동물의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2

**[ 위기동물에 대한 정의 및 보호조항 강화 ]**

- 학대행위에 대한 포괄적 조항으로 개정 (예 : 아동복지법)
- 유기, 학대 외 재해재난 등 동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동물'로의 개념 확장
-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강화 / 소유권 제한

3

**[ 산업 이용 동물에 대한 규정 해석 강화 ]**

- 반려동물과 산업이용동물 간 규정 적용의 간극 최소화 필요
- 사육 및 관리, 운송, 도축, 실험시 인도적 절차와 요건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엄격한 해석



감사합니다

· 토론 01 ·

#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 위기동물

---

권유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울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 위기동물

권유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 1. 위기동물의 개념

현행 동물보호법상 위기동물의 사전적 정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기’란 사전적으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바, 본 토론에서는 그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험이 실현된 상태의 동물 중 유기 또는 피학대동물 그리고 자연재해 등에 노출된 동물” 정도를 일컬을까 한다.

## 2. 위기 동물과 관련된 동물보호법 주요 연혁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는 유기동물(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li> <li>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u>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u></li> <li>2) <u>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함(제4조제1항제2호).</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제4조제3항 신설).</li> <li>■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함(제</li> </ul>

[시행 1991. 7. 1.]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14조제2항 신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15조제2항 신설).

### 3. 현행 동물보호법의 실태와 개선방향

#### 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제도의 부진한 실효성

<p><b>[동물보호법]</b>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실·유기동물</li> <li>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li> <li>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li> </ol> <p><b>[시행규칙]</b>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p>
--

#### 1)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의 현실적인 어려움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와 격리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격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격리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고 경찰력은 그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시간 중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출동 및 구조 활동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24시간 민원이 접수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찰력 등을 긴급격리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현행법이 '격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긴급'이라는 문구가 없고, '격리의 시점이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지자체 공무원일지라도 “왜 지금 당장 격리를 해야 하나?”고 반문할 뿐, 구조 및 즉각적인 격리조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격리 의무를 회피하기 일쑤고 당연한 결과로 결국 피학대 동물을 그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다.

나아가 구조 활동에 있어 수반되는 사유지 침입 혹은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어 구조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구조현장에서는 학대자의 부재로 인한 방치 또는 학대자와의 대치사항으로 학대현장 내부로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면책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이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현장에 진입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제한·박탈 규정의 부존재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할 수 있으나, 보호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동물의 건강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지자체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피학대동물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동물 관련 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또는 박탈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향후 일정 기간 동물관련기관에 취업을 금지<sup>27)</sup>하거나 동물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7) 동물보호법상 동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반려동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제34조 제4항 제5호), 동물관련기관 등 취업 등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학대규정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과 같이 피치 못하게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서는 엉뚱하게도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 위임의 취지 및 범위를 오인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의 공백을 만들어 버렸다.

결국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 자체를

정한 것으로만 해석한다면, 위 시행규칙 조항은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항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바, 동물학대의 원칙적인 금지라는 동물보호법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자연 재해 등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의 부존재

지난 2019. 4.경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 강원지역에 발생한 역대급 산불로 4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람만 챙기는 국가 재난 대응에 대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문제시 된 바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비상대처요령'이 재난 발생 시 동물들의 대피소 동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서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 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 시키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모순적인 대응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난 2017. 포항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반려인들은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 헤매거나 동물들과 차안에서 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역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던 지난 2005년 당시에는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대피를 포기한 일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후 미국 연방 정부의 PETS Act(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이 2006년 통과되면서 지방 정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 입법화되었고, 현재는 30개 이상의 주 정부가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대피, 구조, 보호 및 회복을 제공하는 법이나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피해 집에서 나오고 싶어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혼자 집을 떠나면 남아 있는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까봐 하는 불안감에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하여 재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는바 입법에까지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

## 라. 지자체 및 시설 동물보호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및 벌칙규정의 필요성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접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 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시, 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에 위탁한 보호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보호소 역시도 법정 공고기한 10일 후 안락사를 하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고통이 극심한 동물에 대해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인 처리(안락사)를 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볼 수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수의사에 의해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함에도 비용절감 및 편의를 위해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마취제 투여 없이 근육이완제인 석시닐콜린만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고통사를 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 기간이 끝나 서류상 안락사로 처리된 동물들이 인근 개농장 뜰장에 넘겨져 버젓이 살아있는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와 전담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극소수이지만 동일한 예산과 인력임에도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보호소를 잘 꾸려나가는 지자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동안의 과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노력 정도의 의무만을 부과한 채, 예산이 편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구인 농림부에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이고도 통합적인 감시체제를 발동한다거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는 등의 어떠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안락사 역시도 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인 방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무한바,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완벽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시설보호소의 신고제 등을 통한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1991. 7. 동물보호법이 불과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후 많은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나마 최근 몇 년간은 꾸준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물이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그들을 생명체로 보장해 주는 유일한 법이 동물보호법이고, 아직도 동물보호법이 1500만 반려인의 최소한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물보호법은 계속해서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우려되는 위기동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의 주체 확대 및 격리 판단 기준 등의 구체화, 구조 활동에 따른 재물 손괴 등의 면책규정,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소유권제한·박탈 및 향후 소유금지 규정 및 취업제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 등의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대피에 대한 정책화, 지자체 및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부실 운영에 따른 규제 등이 신설되어 위기동물들이 최소한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본다.



• 토론 02 •

# 반려동물을 위해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정지현 변호사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 반려동물을 위해 다시 쓰는 동물보호법

정지현 변호사 |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 1. 반려동물이란?

-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2021. 2. 12. 시행되는 법에서는 제2조 제1의3호 정의규정을 두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반려’의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음.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 ‘반려’에 관하여 ‘짝이 되는 동무’,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2.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하는가?

- 등록 : 법 제2조제2호, 령 제3조에서 ‘집안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또는 집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법 제12조 이하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을 등록할 의무,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할 의무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 전달 : 법 제9조의2는 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벌칙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 300만원 규정만 있음.
- 맹견관리 :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에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맹견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개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법 제46조제1, 2항).
- 영업 : 법 제32조 이하에서 동물생산업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의 경우 등록사항으로 정하였음.

### 3. 사례를 통해 짚어 보는 동물보호법의 한계

#### 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도울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조).

#### 나.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이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 1) 등록

-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2개월 이상의 개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음. 나머지 동물의 경우 등록으로 보호되지 않음.
-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도 여전히 개만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음.
- 최근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도 등록대상동물을 모든 월령의 개로 확대하였을 뿐,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록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등록대상동물이라 하더라도, 법에서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책임(과태료)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취지는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임(제2조 제2호). 등록되어 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 실제 사례: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개가 로드킬을 당했는데, 관할청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거 즉시 소각해버린 사례가 있었음. 목걸이 육안확인이나 마이크로칩 스캔 등으로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바로 소각해버렸다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만 규율할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함. 예를 들어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하였거나 학대를 당하였거나 유기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개의 상황을 알려주고 처리방법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전달

- 법 제9조의2는 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에 관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벌칙규정이 없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 300만원 규정만 있음.

- 실제 사례: 동물을 택배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보통 갓 태어난 새끼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흡곤란 등 즉사 가능성이 높음. 이 역시 동물학대행위로 규율하여야 함(현행법상 동물학대죄가 열거식이어서 포섭되기 힘들).

### 3) 맹견관리

-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에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맹견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개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견주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법 제46조제1,2항).
- 그러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인 경우 형사처벌이 없음. 이 경우 단순 맹견관리의무위반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법 제47조제1항)이고,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여부만 문제됨. 동물보호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만 규정하였을 뿐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임.
- 실제 사례: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인 경우가 있었음. 이런 경우에도 동물학대행위로 포섭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4) 영업

- 법 제32조 이하에서 동물생산업의 경우 허가사항으로, 동물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전사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의 경우 등록사항으로 정하였음.
- 그러나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벌금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나머지 등록 전용 업종의 경우 과태료 처분만 정하고 있어 많은 펫숍들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펫숍을 운영하는 등의 사례). => 등록제를 허가제로 상향하고, 동물생산업 외의 경우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동물학대행위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바,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유사 규정이 필요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여둔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이나 영업자의 준수사항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예를 들어, 동물생산업자는 관리동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동물의 건강관리, 위생관리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털 관리, 손발톱깎기 및 이빨 관리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임(별표 10). => 적어도 월 1회 이상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 역시

월 1회 업장 정기점검을 하여야 함(현행법상 연 1회).

- 실제 사례: 파양동물을 돈을 받고 거두어서 다시 입양을 보내는 신종핏숍이 성행하고 있음. 이는 소위 입양중개업으로,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속함.  
=> 입양중개업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한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함. 동물등록제를 확대하여 파양 시 지방정부나 동물보호단체에서 파양비용을 받고 양육포기동물을 수용하는 등의 형태가 바람직(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나 동물보호단체에서 파양동물 수용).

#### 4. 결 어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정하였을 뿐 그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특별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거나 동물학대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함.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동물보호법 역시 개정이 계속 되어야 함.

· 토론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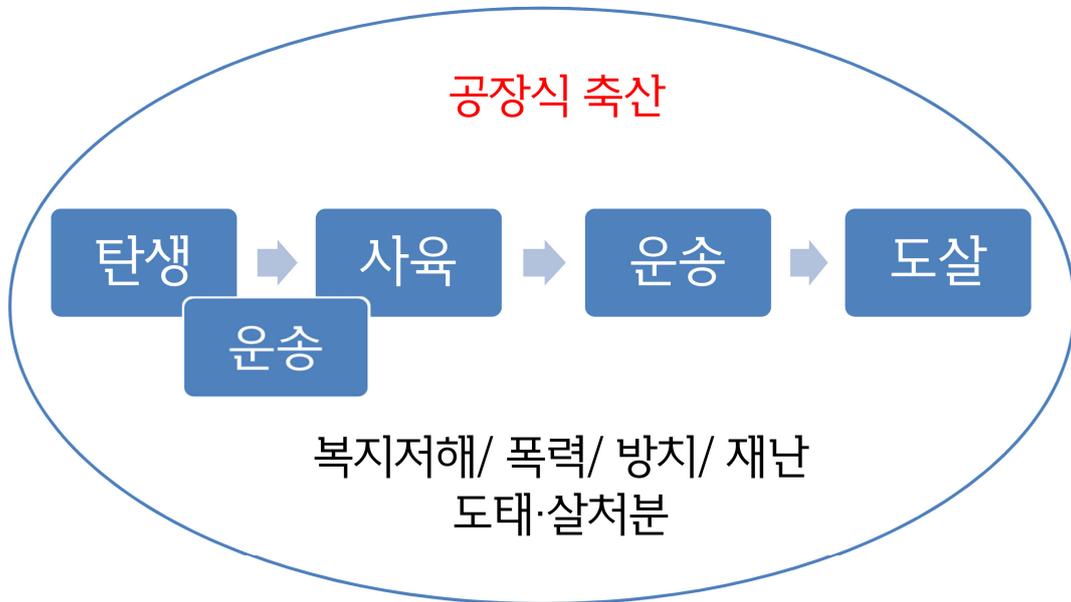
## 농장동물의 생애

김현지 팀장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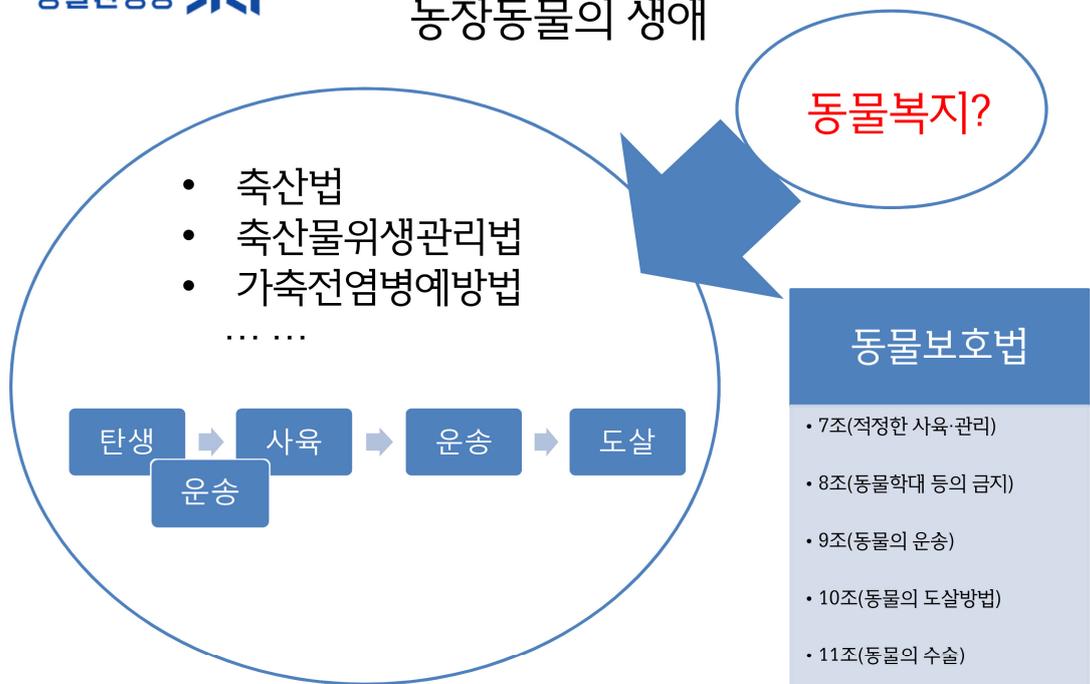




### 농장동물의 생애



### 농장동물의 생애





· 토론 04 ·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실험동물법

---

유영재 대표 | 비글구조네트워크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실험동물법

유영재 대표 | 비글구조네트워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내 동물실험 조항은 1991년 초본 제정 시 삽입되었다.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내용도 극히 단순하여 '동물실험 시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험이 끝나면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한다'는 1개의 조에 2개의 항만 신설되어 출발했다.

그러다가 무려 17년이 지난 2008년에 '동물실험의 원칙'이 정해지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나 운영'같은 골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구성, 운영 감독에 관한 조항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에 식약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타법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이용되면서 타의적인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동물보호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동물보호법의 실험동물 조항이 구체화 되는 계기가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물실험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진 식약처의 실험동물법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 [발제 1]

#### 둘로 쪼개진 실험동물법 과연 효율적일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실험동물에 관련된 법률이 식약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식약처의 실험동물법)'과 농림부의 동물보호법내 '동물실험 조항(이하 농림부 실험동물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식약처의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 절차와 관리의 과학화 그리고 실험동물의 품질관리 등에 중점을 둔다면 농림부의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의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법률에서 중복되어 운영되거나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바람에 동물실험 기관 일선에서의 혼선과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령 농림부의 실험동물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식약처의 실험동물법 '실험동물운영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기능이 두 법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통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실험동물 공급자 규정에서도 두 법률에서는 이를 달리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제 2]

### **미국의 IACUC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한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까**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IACUC 제도, 영국과 프랑스의 License 제도, 독일의 Permit 제도(자문위원회를 거쳐 지역 당국 Regierungspräsidium에서 승인) 등 여러 형태의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식약청과 한국동물실험학회가 관련법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IACUC 제도만을 고스란히 국내법에 적용한 탓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분이 있다.

미국의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와 독립이다. 미국의 IACUC 제도 역시 이러한 자율과 독립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럽국가의 동물실험제도와 달리 동물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위원이 2/3까지 구성될 수 있는 국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토론해보고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제 3]

### **미약한 처벌수준을 어떻게 높일까**

동물보호법내 학대조항에 관련된 처벌수준에 비해 동물실험 관련 조항에 대한 위반시 그 처벌 수준은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동물실험에 관련된 조항을 어기는 경우 현행법의 처벌규정은 제24조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다.

가령 동물실험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거쳐야 합법적이라고 전제한다면 윤리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동물실험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동물보호법 제 8조의 2항을 적용하여 동물학대로 간주해서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가능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 토론 05 •

## 동물보호법 개정방향

김철기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동물보호법 개정방향

김철기 사무관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우리부는 '20.1월 향후 5개년 간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을 발표
  -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22년 변화된 환경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을 재구성할 예정
  
-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크게 6개의 분야와 26개의 추진과제로 이루어짐
  - 6개 분야는 각각 ①동물보호·복지 인식개선, ②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③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임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 인식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복지 의무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초·중·고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방안, 동물보호의 날 지정 등 추진
- 개물림사고 방지,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 평가, 맹견 수입 및 생산허가제 등 맹견 관리 강화, 일반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확대(목줄 길이 지정, 관리자 없이 외출 등 제한) 등을 추진
-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고, 일정기간동안 새로운 동물 소유권 제한 검토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 또는 채광이 없는 공간에 사육 금지)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물학대로 보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거나 규정될 예정인 영업 관련 규제 중 중요한 사항은 법상향 검토
  -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출산 주기, 동물에 대한 공간제공, 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생산업 이외 일반인이 동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제한 등
-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자격검정 체계 구축 등 제도 완비

##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수준 제고〉

- 사설보호소 관리를 위해 사설보호소의 신고제를 도입
  - 개체관리카드 작성, 분양 중인 동물의 공고를 의무화, 안락사 기준·내부번식 방지·가축분뇨법과 구분되는 분뇨처리 기준 등도 마련
  - 애니멀 호더, 동물생산업 등과 구분되는 사설보호소의 기준 마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동물학대를 한 경우, 안락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를 강제하도록 규정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

## 〈농장동물 복지 개선〉

-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는 인증기관 관리, 교육 등 수행
  - \* 현재는 검역본부 3인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심사 수행 중
-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불시점검 및 인증 갱신제 도입을 통해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강화 추진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동물실험 변경심의에 대한 기준 마련, 심의 후 감독 등 제도 마련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심의 및 감독기능을 강화 추진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실험 등에 대해서는 중앙동물실험윤리위\*를 구성하여 우리부가 직접 심의하는 방안 추진

\*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 수행하는 방안 추진

- 우리부에서 국가(우리부, 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의 실태를 파악 및 공개 추진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 현재 10인의 민간위원으로 운영되는 자문위원회인 동물복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위상을 격상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타부처 소관 업무도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
- 위와 같은 신규업무들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추진